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

의정부지방검찰청

공보관 인권보호관 김준섭

전화 031-820-4460/팩스 0502-193-2572

보 도 자 료

2024. 5. 22.(수)

제 목 **11년 8개월 해외도피한 인질강도범 베트남 강제송환 및 구속기소**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-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(부장검사 윤동환)는 **2012. 8.경 조직폭력배들을 사주하여 경쟁 도박장을 운영하던 피해자를 납치·감금하고 1억 7,000만원을 강취한 후 베트남으로 도주하여 11년이 넘는 도피생활을 하던 피고인을 베트남 당국과 긴밀한 사법공조를 통해 검거·송환하여 5. 21.(화) 인질강도죄로 구속기소**하였습니다.
- 당시 피해자를 직접 납치하였던 조직폭력배 4명만 검거되어 단순 감금죄로 경찰에서 송치되었으나, **검찰은 송치된 조직폭력배들 조사와 더불어 통화내역 및 CCTV 분석 등 과학적 수사방법을 통해 배후에서 인질강도를 사주한 주범 등 4명이 있음을 밝혀내고, 그 중 2명을 검거하여 구속기소하고 베트남으로 도주하였던 2명 중 1명인 피고인을 11년 만에 검거·송환하여 구속기소한 사안**입니다.
-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, 앞으로도 검찰은 증가하는 해외도피 사범의 검거를 위해 인터폴, 해외 당국과의 공조관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.

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● 피고인 인적사항

- A(남, 49세,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)

● 공소사실 요지 [인질강도]

- A는 B, 서울 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'청량리식구파' 조직원들(C~H)과 **경쟁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후 분배하기로** 공모하고, **▲A는 대포차, 대포폰 등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**하고, **▲B는 A의 비용을 C에게 전달**하고, **▲H는 C의 지시에 따라 대포차, 대포폰을 조달**하고, **▲C, D, E, F, G는** 2012. 8. 12.경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서 **피해자를 납치한 후 협박**하여 피해자의 배우자로부터 **현금 1억 7,000만원을 받아 강취**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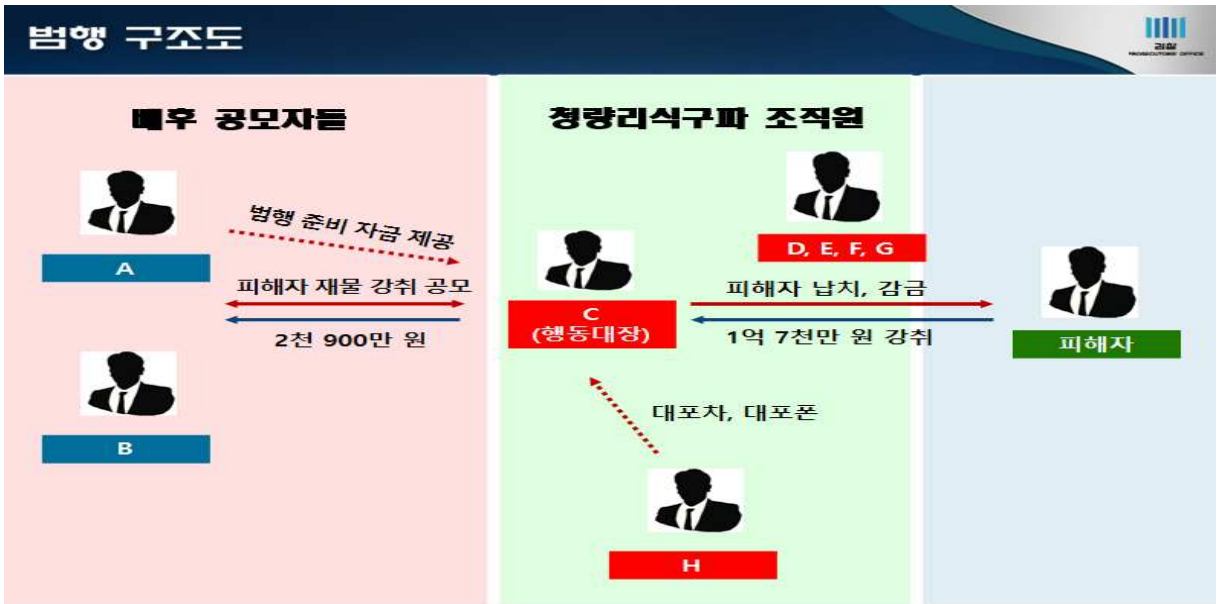

2 주요 수사 경과

● '12. 8. 12. 사건 발생(C, D, E, F만 피의자로 특정)

● '12. 9. A, H 베트남으로 도주

- ’12. 11. **C, 구속 기소**
- ’13. 1.~8. **통화내역, CCTV 분석 등으로 A, B, G, H 인지**

  B, E, G 구속 기소 / A, H 수배
- ’15.~’16. **D 구속 기소, F 불구속 기소**

※ B는 징역 3년, C는 징역 4년, D는 징역 2년, F는 징역 2년, G는 징역 2년, E는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각 선고·확정, H는 ’12. 12.경 사망

- ’24. 4.~5. 베트남 공안, 인터폴 수배된 **A 체포**

  베트남 당국과 송환 협의 및 호송팀 파견하여 **A 송환 및 구속**
- ’24. 5. 21. **A, 구속 기소**

3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

- 조직폭력배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납치한 후 재물을 강취하여 분배하고,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주하여 11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강력사범을 끝까지 추적·송환하여 구속 기소함으로써 **인질강도 범행의 주범을 사법처리하였음**
- **베트남과의 긴밀한 사법공조**를 통해 베트남에서 체포된 피고인을 **신속히 국내로 강제송환**하여 법정에 세울 수 있었음
-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**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**되도록 만전을 기하고, 앞으로도 검찰은 증가하는 해외 도피사범의 검거를 위해 **인터폴, 해외 당국과의 공조관계를 더욱 강화**할 예정임